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1981. 8. 5 1981. 8. 5	전결구경 주장	3 조 / 1 항 전결자함
처리기간	A		
사행일자	김영		
보존년한			
보조기관	주관국강	전결	
	주관행정과강	1981. 8. 5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별첨주관강관 심사됨	
	주관행정제강		
기안책임자	박우영	1981. 8. 5 고시제 298호	
경유	각	안	참조
수신	가	안	참조
참조	가	안	참조
비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제 1 안) 내부결재		
	1. 영등포구 신길동 478 한신공영(주) 대표 이순우 를 부회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 총권첩 제 3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코자 하오며 사업신청지내의 도시계획시설 (아파트)은 크기때에 건설되는 아향이 늘이려 시설로 그 기능이 왜곡되므로 중첩 제 33 조 제 4 항에 의거 별첨 도시계획 변경조서와 같이 변경 (폐지) 하고 각강 별첨과 같이 변경기판에 등록코자 함이다		
	2. 승인내역		
	가. 사업주체 : 영등포구 신길동 478 한신공영(주) 이순우		
	나. 위치 : 영등포구 영등동 311-3 외 34 필지		
	다. 규모 : 아파트 1층 2층 150 세래		
	라. 내역 : 별첨		
	첨부 :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내역 부. 클		



(제 2 안)

수 신 : 영등포구 선월동 478 한신공영(주) 대우 이준우

제 목 : 증 권

1. 귀하가 당시에 제출한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2. 동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 5 조 제 8 조 제 33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협의 승인 도시계획법 제 4 조 제 12 조 제 24 조 제 25 조 규정에 의한 결정 승인 조는 허가를 가름하나 위관청 제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감등을 받을 것이며 층수 증감전과 및 준공보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에 사용될 설계도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나 본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신청지배의 도시계획시설 (아파트단지) 에 대하여는 별첨고시 (안) 과 같이 도시계획변경 (폐지) 조치하였으니 사업시행에 차질없이 바랍니다

가 승인개요

구분	유호			외기면적	건축면적	면적률	건폐율	용적률
	종수	층수	가구수					
아파트	1	1	10	26202	1140	3.97%	17.27%	104.2%
기타					1112	3.86%		

첨부 :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 (승인조건포함) 4매 부

(제 3 안)

수 신 : 수선차철즈





제 목 : 원보 (시보) 게재 의뢰

1. 강릉시 반포동 14 부청바 도시계획시설 (아동공원)을
주행건설 증진법 제 3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고서(안)
와 같이 도시계획변경 (폐지) 하얏기 원보 (시보) 게재 의뢰 하오나
지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 (안) 1부 붙

수신처 : 총무처장관, 문화방송관

(제 4 안)

수 신 : 건설부 장관

참 조 : 주택관리법

제 목 : 증 건

1. 영등포구 신길동 478 현신공업 (주) 이순우
로 부회 민영주행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이 있어 주행건설 증진법
제 33조 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하얏으며 사업선
청지내의 도시계획시설 (아동공원) 에 대하여는 증법 제 3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고시 (안) 와 같이 도시계획 변경
(폐지) 하얏기 보고 합니다.

첨 부 : 민영주행건설사업 계획승인바영서 1부

2. 도시계획시설 변경 (아동공원폐지) 고시 (안) 및 증법 부

3. 위치를 및 매지로 각 부 붙

(제 5 안)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증 건

1. 연세에 제출된 강릉시 반포동 311-3 의 34 필지상의

한신공영(주) 대표 이준우의 변형주택 건설사업 승인 신청
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사업 계획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및 제 43 조
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 5 조 제 8 조 제 33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협의 조는 허가를 가급히 승부하는 설계
로서 (별첨)에 의한 관련 제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기공 및
중간 준공검사를 물론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것이며.

3. 사업승인 내역 및 승인조건 등을 검토하여 관계법령
에 기재되어 있도록 관계부서 (구청자치기관) 와 협의를 거쳐
지도 상등에 철거를 거둘것.

4 동사업 신청지 내의 도시계획시설 (아동유원)에 대하여는 주택
건설촉진법 제 3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 도시(안) 과 같이 도시계획
변경(폐지) 조치 하였으니 강남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이해 관계인의 열
람에 윤하고 (시민봉사실장) 도시 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도시
(폐지도시) 를 필할것 (도시 정비국장)

첨부 1 승인내역 1부

2. 조건사항 1부

3. 배치도 및 위치도 각 1부

4 도시계획변경도시(안) 및 도면각 1부 (도시계획 1과장 강남구청장) 골.

수신처: 주택관리과장, 도시계획 1과장, 소방본부 지도과장, 강남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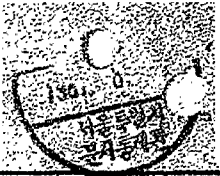
(제 6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 목: 등 기

1. 다음과 같이 변형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

검열



건설 총건법 제 33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 15조의 건축
허가를 가급히는 승인을 하겠기 롱하오나(허나) 상무승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라 (할것)

가 건설주체 : 영등주 신분증 478 한정공영(주) 이순우

나 건설위치 : 강남구 방포동 311-3외 34 필리

라 건설내용 : (제 2만 4천 가항 이기시행)

- 첨부 : 1. 승인바별 1부
2. 조건사항 1부
3. 평면도 (배려도, 구적표) 1부
4. 위치도 1부

수신처 : 서울시 마포구원희 교동갑 한국전력주식회사사장 등성지실사주소,
강남경찰서장 양부소방서장 행정과장 도시가쓰와장 도시계획1.2과장,
조경과장 녹지과장 하수시설과장, 급수와장, 강남구청장 (세우1과장,
산업과장, 주택과장, 도특과장, 수도2과장)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제안

1. 사업자 : 영등포구 신길동 4가 칠산음영(주) 대표이사 이호우

2. 사업위치 : 강남구 방포동 3가-3외 34필지

3. 사업량 : 아파트 5층 7동 150세대

4. 사업구분 :

가. 구조 : 철근 콘크리트 타면조

나. 연면적 : $33510 \frac{m^2}{m^2}$ (10.136 평)

다. 대지면적 : $26202 \frac{m^2}{m^2}$ (7.926 평)

5. 부대, 복리시설 : 신청서와 동일

6. 사업비

가. 총사업비 : 13,069,297 천원

나. 세대당사업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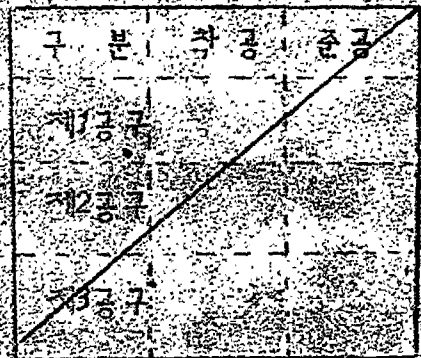
- A-1 : 88,241 천원
- A-2 : 87,890 "
- A-3 : 88,373 "
- B-1 : 72,864 "
- B-2 : 72,972 "

7. 사업기간

가. 착공 :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준공 : 1983.2.28

8. 설계도서 : 신청서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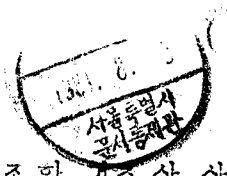




1. 신청자는 정지공사 미완료 토지로서 정지공사(취지조성)를 선행 하여야 하므로, 공사 착공전에 반드시 당시(구 회정리과, 구청 도시정비과)에 별도의 도서를 제출하고 기술지도 감독을 받을 것.
2. 가스시설은 시공전 관련부서(서울시 도시가스과 및 고압가스 인보협회)의 기술지도를 받아 시공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산업과장)에게 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을 것.
3. 하수도는 분류수이므로 하퇴 우수관 ($D = 800mm$) 과 오수관 ($D = 450mm$) 이상으로 할 것.
 - 가. 사업시공전 관할 구청(토무과)에 착공계 및 하수관 설계도를 제출하고 사전 검토 협의를 두하여, 기술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고, 착공전, 공사중, 완공후 사진을 첨부 하수시설 준공 도면과 함께 제출하여 하수도에 대한 준공검사를 별도 받을 것.
4. 급수를 위하여는 규정된 용량(세대당 3톤)의 저수조 및 흡수정 이화장치(자체가압 시설 포함)를 시설 완료후 급수 할 것.
5. 조경 시설에 대하여는 배식계획 평면도에 의거 시공하되 관할 구청장(녹지과)에게 신고후 착공할 것.
6. 건축공사용 시멘트 제품은 면허업체의 제품으로 시험성과표가 있는 우수제품을 사용하고 판매 확인증을 첨부 준공 신청할 것.
7. 자체 품질관리반을 편성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당시(주위 관리과)의 지도 감독을 받아 운영할 것.
8. 공지사항을 입주인이 청취할 수 있도록 옥내 방송시설을 할 것.
9. 지하실은 대피호로 전용할 것.



10. 건축물 준공전에 각종 부대 및 부티시설 준공을 선행할 것.
11. 건물 주체는 단지내에 설치하되 준공후 27월 이상 존치할 것.
12. 본임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가. 한국 주택은행과 협의 확정되지 아니한 주택자금 용자를 조건으로 분양공고하는 사태가 없도록 할 것.
 - 나. 부가가치세 부담 대상 여부를 명확히 구분 표시하여 분양 공고할 것.
 - 다. 월 관리비의 20% 수준의 특별 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할 것임을 명시할 것.
13. 급수는 82년 6월 이후 급수 가능하나, 반포동 255-9외 17필지상에 건립코자하는 한신 14 차 아파트 (130세대)와 공동 부담으로 서초동 641브루 앞 기설관 $D=500mm$ 에서 산 161-49앞 까지 $D=200mm \times L=300m$ 부설하고 산 161-49 부터 29호 까지 56호 부터 98호 까지 각각 $D=100mm \times L=340m$ 부설한후, 신청지 앞 $D=500mm$ 에서 $D=150mm$ 로 인입 급수할 것.
14. 지하수를 개발 활용할 것.
15. 위험물 일반 취급소 허가는 본 건물 준공 이전에 별도허가 득하도록 할 것.
16. 아파트 기본 계획에 맞도록 하고 원지까지 추량을 필한후 건축 할 것.
17. 단지의 지반을 인접 도로면과 상토하여 인접 도로에 기설된 하수도에 연결할 것.
18. 동지역은 비정지 토지로서 인접 쿼지에 지장이 없도록 택지조성 하고 본토지 동측 ($B=15M L=196M A=30a$) 서측 ($B=8M L=190M A=15a$) 진입도로를 신청자 부담으로 시행할 것.
19. 본 설계도를 구획정리과에 승인을 득한후 관할 구청 토목과 지도 감독을 받아 아파트 준공 이전에 준공 검사를 받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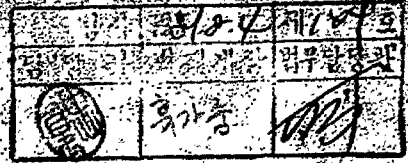


- 20. 착공전 경계명시 측량하고 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현장을 공사 감리자로 선정 보고할 것.
- 21. 급수공사는 목내 급수시설 공사 기준에 의할 것.
- 22.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안내표시)에 의거 별표7 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 표시판을 설치 할 것.

첨 부 : 사업승인서 (설계도서) 1부.

고 시 (영)

서울특별시 고시 제 3호
 도시계획시설 변경 (폐지)



1. 건설부 고시 제 131호 (76.8.21)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6호 (76.10.2)의 관례임.
2. 영등 아파트 지구 (1-1지구)내 강남구 반포동 14부락내의 도시계획시설 (아동공원)은 다음과 같이 이를 폐지한다.

1981. 8.

서울특별시 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아동공원	영등 1-1지구	1,300㎡	
변경	"	"	0	폐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 조사

가. 시설 변경 조사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거점	아동공원	영동 1-1구	1,300㎡	
변경			0	폐지

나. 변경 사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동 단지의 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아파트 기본계획상의 아동공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시 일정규모 (100세대 이상 330㎡ 초과시 3세대당 3.3㎡) 이상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복지항 이므로 단지내 어린이 놀이 시설기준 변경에 의거 대체시설 조사 함

[별지 제 30 호서식]

분류기호

수신 : 건설부장관

전화

발신 :

①

사업계획승인 (변경) 결과보고서

신청인	①상 호	한신산업주식회사		②등록또는 지정번호	제 42 호
	③대 표 자	이 승 우		④주민등록 번호	
	⑤영 업 장 지 소 재 지	연등동구 신길동 47동 (전화) 933-1131			
승인사	⑥사업 위치	초남구 반동동 311-3의 34필지		⑦용도지역 및 지구	주거선언 다목적지구
	사업 내용	⑧ 대지면적	⑨ 건축연면적	⑩ 주택형별	⑪ 주택규모
		1,200㎡	33,510㎡	단독 평형 연립 평형 연립 18평형 16평형	동 세대 동 세대 7 동 16 세대
업 계	사업 기간	⑬착공예정일자		⑭준공예정일자	
		1981. 8.		1983. 2. 28	
요	⑮승인 조건	별첨 1호			
⑯부대시설및부리시설 적정 처리 여부					
⑰변경 승인 사항					

2205-01-48D
80.10.6 승인

(별지 제29호 서식)

사업계획승인서

주택건설

대지조성

① 승인번호

사업주체	② 상호 한신승영 주식회사	③ 지등등록번호 제 42 호		
	④ 대표자 이 승 우	⑤ 영업소소재지 영등포구 신길동 4가		
설계자	⑥ 성명 (주) 식두종합설계 대표이사 이 승 우	⑦ 자격		
	⑧ 주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1-58A호			
공사시공자	⑨ 성명 한신광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승 우	⑩ 자격		
	⑪ 주소 영등포구 신길동 4가			
사업계획	⑫ 사업위치 간성동 31-3의 2동	⑬ 용도지역 구기 지역 다과지구		
	⑭ 대지면적 26,202 제곱미터	⑮ 건축연면적 33,510 제곱미터	⑯ 주택형별 규모 단독 66평형 (70세대) 7동 연립 56평형 (10세대) 1동 아파트 150세대	⑰ 사업비 12,065,217 원
	⑱ 사업내용			
⑲ 사업기간	⑲ 착공예정일자 1981. 2.	⑳ 준공예정일자 1983. 2. 28		
21. 승인내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

1981. 8.

~~차경~~ 서울특별시청 인